

제27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4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조 례 명	쪽수
2024-19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1
2024-20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제기업과)	9
2024-2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13
2024-22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기술과)	21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19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면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인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주요내용

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 연장함(안 제2조·제5조·제7조·제9조)

-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2)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4)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나. 인용법령 개정, 약칭표현에 따른 용어 정비함(안 제4조·제6조)

다. 감면기한 만료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사항 삭제함(안 제9조의2·별표)

라.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함(안 제10조)

-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300원 ⇒ 50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600원 ⇒ 1,000원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55조·제9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2. 2.~2. 14.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제7조,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2. (생 략) ②~④ (생 략)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 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생 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 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2. 법 제78조의3 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 ② (생략)

<삭 제>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삭 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율에 따른 감경률(제9조의2 관련)

임대료 인하율	경감률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	100분의 60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	100분의 65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	100분의 70
100분의 70초과	100분의 75

비고

1.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다만,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frac{(\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 \text{인하기간 평균 월 임대료})}{\text{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 \times \text{임대료 인하 개월 수} \div 3$$

2.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text{보증금} \times \text{이자율} \div 12\text{개월}$$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감면기한 연장에 따른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입 감소

나. 관련 조문: 안 제2조·제5조·제7조·제9조

-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2)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3)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4)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나. 2024년 감면 추계: 15,329천원 정도

작성자 재무과장 이동복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20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시행 2024. 5. 17.)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사용하거나 인용하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재’ 용어 및 인용법명을 변경함(안 제1조~제9조)

1) 문화재 ⇒ 문화유산

2) 「문화재보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23.~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의 개정)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2호 중 “문화재보존”을 “문화유산보존”으로 한다.

제2조(「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3조(「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문화시설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조(「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송대
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각각 한다.

제5조(「거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향토문화
유적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적”을 “문화유산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조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 제8조제2호, 제14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재난관리 주관기관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국가유산청	가. <u>문화유산</u>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제8조(「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9조(「거창군 계획조례」의 개정)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4-21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산업자원부 지원으로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기능 및 시설을 정함(안 제2조·제3조)

1) 기능: 근로자의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근로자와 군민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등

2) 시설: 문화 및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사무 등을 위한 시설

나. 휴관일, 이용신청, 이용의 제한을 정함(안 제4조~제6조)

다. 이용료 및 감면, 반환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위탁을 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제161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2,144백만원 확보(국비 1,640백만원, 군비 504백만원)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24.~2.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및 시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와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근로자와 군민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문화 및 체육, 편의, 회의 및 교육, 사무 등을 위한 시설로 구성한다.

제4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이용의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 ② 휴관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

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자에게 이용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잘못으로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행위 등 센터의 목적 외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하거나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및 감면)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무인세탁실 이용료는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인세탁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부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용 예정일 전에 이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 이용 예정일 그날: 100분의 50

나. 이용 예정일 1일 이상 전날: 전부

제9조(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를 관리·운영하기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구분	이용료	
	기본	추가
1. 대회의실	2시간에 20,000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본 이용료에 20퍼센트 추가 가. 1시간 초과 때마다 다. 평일 18시 이후 또는 토요일
2. 소회의실	2시간에 5,000원	
3. 체력단련실	1개월에 15,000원	
4. 실내 테니스장	1시간에 10,000원	1시간 초과 때마다 기본 이용료에 20퍼센트 추가

[별표 2]

이용료 감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감정대상	감정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100분의 10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가족	100분의 50. 다만, 각 호에 중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관련조문

- 1)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안 제2조)
- 2) 운영의 위탁(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 연도 (2022년)	2차 연도 (2023년)	3차 연도 (2024년)	4차 연도 (2025년)	5차 연도 (2026년)	합계
계	1,689	1,727	2,144	45	45	5,650
국비	930	1,320	1,640	-	-	3,890
도비	-	359	-	-	-	359
군비	759	48	504	45	45	1,401

3. 관련 의견

거창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축 및 시설 비용: 5,560백만원
2. 운영비용 보조: 매년 45백만원 정도 소요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이정희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22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지원하여 군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제3조)

1) 차액: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

나. 차액 지원, 지원 및 제외 대상, 신청을 정함(안 제4조~제6조)

1) 차액 지원 대상: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를 정함(안 제7조~제15조)

1) 기능: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 및 지원범위, 기준가격 결정, 품목별 차액 지급 기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사업 발생시 추경 확보예정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1. 24.~2. 14.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불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준가격”이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
4.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전국 주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벼일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찰벼일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자체 수매가격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의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차액 지원)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제외 대상) ① 차액 지원 대상은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군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을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이 중대한 과실이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게을리하여 농산물 생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차액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차액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하는 주요 농산물 품목 및 지원범위
2. 기준가격 결정
3. 품목별 차액 지급 기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농산물 가격안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1명
2. 농업관련 및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중 7명 이내
3.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인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기준가격 결정 및 차액 지원 계획 시 그 지급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 운영 등) ① 농산물 가격안정 및 기준가격 보장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기준가격 대비 도매시장가격이 일정부분 이상 하락 시 차액의 일부 혹은 전부 지원

나. 관련 조문: 차액 지원(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농작물 가격변동 추이를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원 빈도는 10년에 1~2차례 정도 예상

1) 최근 10년간 기준가격 보장제 발동 횟수

(가) 사과 2, 벼·찰벼 1, 딸기 1

2) 최근 10년간 지원된 예산

(가) 벼 1,370백만원, 찰벼 87백만원

(나) 사과 1,762백만원

(다) 딸기 792백만원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벼	찰벼	사과	딸기	기간
군비	연 1,370	연 87	연 1,762	연 792	2024년~ 2028년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주요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 공통기준

- 1) 작물별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일정분 이하로 형성
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2) 품목 구분 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별 300만원 한도

나. 벼·찰벼: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85퍼센트 이하 하락 시

- 1) 전체농가: 벼 5,740농가 찰벼 164농가
- 2) 최근 10년간 발동 빈도
 - (가) 벼 2016년 1차례
 - (나) 찰벼 2022년 1차례
- 3) 벼 kg당 75원 보전 시 1,370백만원
- 4) 찰벼 kg당 75원 보전 시 87백만원

다. 사과·딸기·포도: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80퍼센트 이하 하락 시

- 1) 전체농가: 사과 577농가, 딸기 264농가
- 2) 최근 10년간 발동 빈도
 - (가) 사과 2017년, 2019년 2차례
 - (나) 딸기 2017년 1차례
- 3) 사과 1,762백만원
 - (가) 쓰가루 136백만원
 - (나) 홍로 780백만원
 - (다) 부사 846백만원 등
- 4) 딸기: 설향 792백만원

작성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